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4. 1 선고 2020나11714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4. 1 선고 2020나11714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4. 29 선고 2018가합9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민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현, 담당변호사 최정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민규

변론 종결2021. 3. 4.

판결 선고2021. 4. 1.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4. 29. 선고 2018가합9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 추가하는 내용]

㉠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기초사실 마항 기재 판결)의 피고인이던 C은 위 형사사건에서 'E이 C에게 호텔 카지노 정켓방에서 4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하여야 홍콩달러 환전이 가능하다고 하여 환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롤링칩을 건네받아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 C이 비정상적인 환전방법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따랐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든 점, ㉢ C이 2018. 1. 13. 및 2018. 1. 14. E과 대화할 당시 E에게 약속한 대로 환전해 주지 않은 데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은 점, ㉣ 이와 관련하여 C은 '위 2018. 1. 13. 및 2018. 1. 14. 당시 E 또는 피고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C 주장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 C은 수사기관과 제1심법정에서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자발적으로 카지노 칩으로 바꾸어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C의 위 주장을 배척한 사실이 인정되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6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위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남양우

판사박규도

판사김운석